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 / 전송 (02) 731-6562
 처리부서 : 법무담당관 (시청본관 3층) / 담당자 : 윤영권

문서번호 법무 11010- 1529

시행일자 1998. 5. 8. (년)

(경유)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년	[Handwritten Signature]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담당관	[Handwritten Initials]		
법제계장	[Handwritten Initials]		
기안	윤영권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공무원국의훈련심의위원회규정 발령

훈령 제 882 호

1. 서울특별시공무원국의훈련심의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가. 발령예정일 : '98. 5. 11 (월)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882호

-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1부.끝.

서울특별시

(제2안)

수신 : 공보담당관

제목 : 훈령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공무원국의훈련심의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8. 5. 11 (월)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882호

-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2부.끝.

서울특별시

(제3안)

수신 : 인사과장

제목 : 훈령 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공무원국의훈련심의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8. 5. 11 (월)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882호

첨부 : 1. 발령목록 1부.끝.



서울특별시

훈령 발령 목록

1건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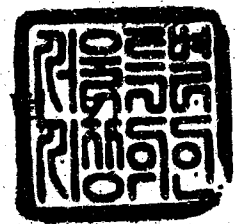
연 번	법 규 명	번 호	주 관 부 서
1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 규정중개정규정 (개정)	제882호	인 사 과
	“ 이 하 여 백 ”		

서울특별시 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

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8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강



서울특별시공무원국의훈련심의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중앙부처의 명칭변경 및 기타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관계부처 명칭변경(안 제1조 및 제7조)

- 총무처 → 행정자치부

나. 심의위원회의 기능추가(안 제4조)

- 해외주재관 선발에 관한 사항
- 훈련기간 및 기관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국의훈련업무처리지침(행정자치부 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정책기획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본문중 “총무처예규 제263호의 규정”을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외훈련공무원 및 해외주재관 선발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 훈련기관·기간(연장시는 연장기간)의 적정성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총무처”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무처예규 제26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 -----</p>
<p>제4조(기능) 심의위원회는 공무원국외훈련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략)</p> <p>2. <u>국외훈련공무원의 선발 및 추천</u></p> <p>3. <u>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u></p> <p>4. ~ 5. (생략)</p>	<p>제4조(기능) -----</p> <p>1. (현행과 같음)</p> <p>2. <u>국외훈련공무원 및 해외주재관 선발</u></p> <p>3. <u>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 훈련기관·기간(연장시는 연장기간)의 적정성</u></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p> <p>①~② (생략)</p> <p>③ <u>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총무처장관이 요구시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u></p>
<p>제7조(기타) ①기타 심의에 따른 요건·기준 등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계규정과 총무처 등의 주관부처의 지침에 의한다.</p> <p>②총무처와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생략)</p>	<p>제7조(기타) ① -----</p> <p>----- 행정자치부 -----</p> <p>②행정자치부 -----</p> <p>③(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02)731-6224 / 전송731-6053
 처리부서 : 인사과 (본관 4층) 과장 차천복, 계장 김종구, 담당 이상용

문서번호 인사 12130-959

시행일자 1998. 4. 28.

수신 법무담당관

선 결	강		지 시		
접	일자		결 재	법제계장	김종구
수	시간			법제심사계장	이상용
	번호		공 람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조치의뢰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 규정의 근거법규 명칭 등이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 규정중 개정안 1부. 끝.

인 사 과 장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5224 / 전송 (02) 731-6053

문서번호 인사 12130-919

시행일자 1998. 4. 28

(경유) (제1안)

수신 내부절재

취급					시 장
보존					직무대리
행정(1)부시장	서기				
내무 국장	서기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인사 과장	서기				법무담당관
기안	능력발전계장				

제목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규정의 근거법규 명칭 등이 변경되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 부 :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 규정중 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2안)

수신 법무담당관

제목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조치의례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규정의 근거법규 명칭 등이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오니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 규정중 개정안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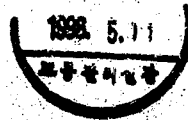
인사과장

서울특별시훈령 제826호

서울특별시버스노선조정심의회규정 폐지(안)

김영

서울특별시버스노선조정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총무처예규 제263호의 규정”을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외훈련공무원 및 해외주재관 선발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 훈련기관·기간(연장시는 연장기간)의 적정성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총무처”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무처예규 제26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행정자치부 시·도·자치경찰청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 ----- ----- -----</p>
<p>제4조(기능) 심의위원회는 공무원국외훈련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략)</p> <p>2. <u>국외훈련공무원의 선발 및 추천</u></p> <p>3. <u>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u></p> <p>4. ~ 5. (생략)</p>	<p>제4조(기능)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국외훈련공무원 및 해외주재관 선발</u></p> <p>3. <u>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 훈련기관·기간(연장사는 연장기간)의 적정성</u></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p> <p>①~② (생략)</p> <p>③ <u>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총무처장관이 요구시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u></p>
<p>제7조(기타) ①기타 심의에 따른 요건·기준 등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계규정과 총무처 등의 주관부처의 지침에 의한다.</p> <p>②총무처와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생략)</p>	<p>제7조(기타) ① ----- ----- -----행정자치부 ----- -----</p> <p>②행정자치부 ----- ----- -----</p> <p>③(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규정 [1993. 9. 10
훈령 제 778 호]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국외훈련업무 처리지침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총무처에규 제26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무원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치)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 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내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과장으로 한다.

제 4 조(기능)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국외훈련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2.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및 추천 *(서울특별시 해외주재관 운영규정 제 6조 '선발전차' 규정에 따라 심입)*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 *훈련기관, 기간(연장시는 연장기간)의 결정*
4.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또는 유직
5.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 5 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총무처장관이* 요구시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7 조(기타) ① 기타 심의에 따른 요건·기준 등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계규정 *행정자치부* 과 총무처 등을 주관부처의 지침에 의한다.

② 총무처와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 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훈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장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나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